

대구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3071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의 회생관리인 A

원고 소송수계인의 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16.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단121824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F 임야 16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9. 2. 7.

접수 제77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보조참가인과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의 보조참가인(이하 ‘원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10. 30. A과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간 2013. 10. 30.부터 2018. 10. 2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보조참가인은 A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A은 D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신용보증서를 D은행에 제공하였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의 대위변제

1) A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8. 2. 8. D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0,439,152원을 대위변제한 뒤 같은 날 60,940원을 회수하였으며, 대위변제잔액은 10,378,212원이다.

2) 원고 보조참가인과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 보조참가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A이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대위변제금), 법적절차비용 등과 원고 보조참가인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보조참가인이 정한 이율은 위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고, 법적 절차비용은 353,568원이며, 회수한 60,940원에 관하여 16원의 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다. A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A은 2019. 2. 7. 피고에게 포항시 남구 C 임야 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2. 7. 접수 제77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A의 재산상황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과 김제시 E에 있는 공시지가 13,678,400원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115,671,796원의 각종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마.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

1) 원고 보조참가인은 A을 상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에서 A과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A과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A과 피고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 그런데 A은 대구지방법원 2019개회24102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9.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채무자 A의 회생관리인으로 원고가 선정되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부인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인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가 그대로 준용되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의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의 규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무렵부터 A의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A로서는 당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A이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등 참조),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A이 2012. 2.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인 45,570,000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2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 피고가 매매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고금리의 카드로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점 등 다소 이례적인 정황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나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그로 인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① 피고와 A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공인중개사인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고 G의 중개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G에게 중개수수료 18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인 G도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G의 증언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A이 2012. 2.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인 45,570,000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2,000만 원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하여 G는 A이 기획부동산에 속아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담보등기나 가압류 등 A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는 2019. 2. 7. H카드에서 카드론대출 2,000만 원을 받아 A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19. 3. 20.부터 위 대출금의 변제를 시작하여 2021. 5. 20.경 대출금의 변제를 완료하였고, 위 대출원리금은 피고 명의 I조합계좌에서 매월 출금되어 상환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인하여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서영애, 판사 서범준, 판사 박치봉